

제1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8. 5. 8(목)

#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종진]

## 【 목 차 】

1.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2
2.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1
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의안번호 제2008 - 14호>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년 4월 25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산림환경과)
- 다. 회부일자 : 2008년 4월 29일

### II.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가축분뇨” 관리에 대하여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 III.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주거밀집지역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일정구역을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

- 가축사육 허가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 사육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가축사육 허가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봄

## VI.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 「수도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8. 3. 24. ~4. 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2008. 4. 1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IV.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 7. 27.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 9. 28. 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 해 오던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오수·분뇨분야는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로 전부개정 할 계획에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축산폐수분야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규정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임.

나.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필요조항임.
- 안 제3조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

여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가축사육의 제한규정을 둔 것으로 적법한 규정으로 보여짐.

다만, 이 조례안 [별표 1] 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정하면서 해당구역 중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조문규정은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바, 본 조항의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 군수의 재량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도 있어보이므로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해당구역을 표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4조(허가절차 등), 안 제5조(사육자의 의무), 안 제6조(허가취소) 등은 이 조례제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이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 계 법 령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젓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젓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젓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frac{\text{제1 배출시설의 면적}}{\text{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frac{\text{제2 배출시설의 면적}}{\text{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dots$$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

---

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

제2 배출시설의 면적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한다.

## □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2008 - 15호>

[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년 4월 25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산림환경과)
- 다. 회부일자 : 2008년 4월 29일

## II. 제안이유

-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현실에 불부합한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 III.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내용과 인용 조문번호를 변경함.
  -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 보조금(안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15조 → 제94조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안 제1조부터 5조까지, 제8조)
  -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각호 → 각 호
  - 타 기금 → 그 밖의 기금
  - 내지 → ~부터 ~까지

-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사무분장에 맞게 개정함(안 제7조)
  - 자금출납 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주사 →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

##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4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무과장 합의

라. 그 밖 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3. 25.~4. 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의견

-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낙동강수계물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2. 11. 22. 제정된 조례로, 그간 이 조례에 준용한 법조항 및 조문의 일부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맞게 개정하고, 또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크짐에 따라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내용에 맞게 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제94조(회계공무원의 책임)①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의안번호 제2008 - 16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년 4월 25일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
- 다. 회부일자 : 2008년 4월 29일

## II.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시행(2007. 9. 28.)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III.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중수도의 설치, 관리, 용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배수설비의 시공, 준공,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부터 제22조까지)
-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요금의 감면, 할인, 이의신청,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

####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하수도법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산림환경과 합의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8. 1. 23.~2. 11.)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2008. 4. 1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V.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 해



오던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축산폐수분야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환경관리과 소관), 오수·분뇨분야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하수관거)로부터 50m 내로 지정하였으며(안 제2조), 수도법에 중수도 부분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였고(안 제7조부터 제10조), 종전의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조례」에 있던 분뇨수집운반 대행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이 조례에 명시하였음(안 제23조, 안 제24조)
  
-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 환경부의 조례기준표준안을 기초하여 거창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 계 법 령]

##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 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73조(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 하수도법 시행령

제21조(중수도의 설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이란 건축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도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6. 그 밖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은 배수설비 설치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최대 30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중수도 설치 통보 서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수도설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9조(중수도의 시설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
2. 재처리한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재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 제2항 관련)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mm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 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의 지름 (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mm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m <sup>2</sup> )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관의 지름 (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m <sup>3</sup> )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6,000 이상
관의 지름 (mm)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약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5조 (청구기한의 연장등)** ①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日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3조제1항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③제73조·제74조 및 제80조의 기간은 부변기간으로 한다.

**제79조 (청구의 효력등)**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배출허용기준)** ⑧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부착시기 및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